

제 1231 호
1985. 12. 26

발신인 : 공 모 관 이 상 무
전 화 : 731-6111-3
인 처 : 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
전 화 : 735-3337

과	보도국장	공보처장	공보관	공 보 관
				공 보 관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2035 호 :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3

제 2036 호 :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 개정조례 4

제 2037 호 :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4

제 2038 호 : 서울특별시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설치조례 5

제 2039 호 : 서울특별시립운동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7

제 2040 호 : 서울시립대학설치조례중 개정조례 7

제 2041 호 :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제 2042 호 :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 이 면 계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038

제 2043 호 :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제 2044 호 :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9
제 2045 호 : 서울특별시립청소년사업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9
제 2046 호 :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0

◎ 규 칙

제 2125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1
제 2126 호 :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3
제 2127 호 :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4
제 2128 호 :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5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본청·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
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035 호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
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본청 지 공무원정원표
가. 일반회계중 5급정원 "209"를
"212"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43"을 "146"으로 하며, 6급정
원 "375"를 "383"으로 하고 정
원내용중 행정직 "248"을 "253"
으로 건축직 "21"을 "23"으로 농
림직 "11"을 "12"로 하고, 7급정
원 "460"을 "474"로 하고 정원내
용중 행정직 "326"을 "335"로 전
기직 "11"을 "12"로 토목직 "49"
를 "51"로 기계직 "8"을 "9"로 통

신직 "3"을 "4"로 하고, 8급정원
"15"를 "17"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1"을 "13"으로 하며, 9
급정원 "69"를 "72"로 하고 정
원내용중 7급상당 "23"을 "24"로
하고 팔호안의 자료조사원 "1"을
"2"로 하며, 8급상당 "17"을 "19"
로 하고 동 팔호안에 "영화기사"
를 신설하며, 기능직정원 "13"을
"15"로 하고 정원내용중 7등급 기
계장 "3"을 "4"로 8등급 통신원
"1"을 "2"로 하며, 고용직 정원
"352"를 "353"로 하고 정원내용중
교환원 "11"을 "3"으로 사진사
"8"을 "10"으로 운전사 "108"을
"110"으로 전공 "16"을 "18"로
청부 "48"을 "54"로 기계공 "14"
를 "16"으로 하고 합계란 정원
"1,625"를 "1,663"으로 한다.

(별표 2) 구청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일반회계중 8급정원 "1,674"를
"1,675"로 하고 정원내용중 농림
직 "43"을 "44"로 하며, 고용직정
원 "1,653"을 "1,698"로 하고 정
원 내용중 운전원 "304"를 "323"
으로 전공 "251"을 "262"로 청부
"168"을 "177"로 수위 "28"을
"29"로 기계공 "63"을 "64"로 감
시원 "257"을 "261"로 하며, 합계
란 정원 "7,743"을 "7,789"로 한다.

(별표 3) 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정
원표중 고용직정원 "55"를 "56"으
로 하고 정원내용중 기계공 "1"을
"2"로 하며, 합계란 정원 "79"을
"80"으로 한다.

부 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중 교원원 정원(3명)의 초과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036 호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종합건설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나. 지원사업소정원표중 6급정원 "11"을 "15"로 하고 건설사업소의 토목직 "4"를 "8"로 하며, 7급정원 "13"을 "17"로 하고 건설사업소의 토목직 "4"를 "8"로 하며, 8급정원 "24"를 "25"로 하고 건설자재사업소란에 "토목직 1"을 신설하며, 9급정원 "14"를 "22"로 하고 건설사업소의 토목직 "5"를 "13"으로

하며, 기능직정원 "212"를 "220"으로 하고 건설사업소의 8등급 기제원 "63"을 "71"로 하고 건설자재사업소란에 "6등급:기제장 1"을 신설하고 7등급:기제장 "37"을 "36"으로 하며, 계급별 정원 "연구직 1"과 건설자재사업소의 "광업연구사 1"을 삭제하며, 고용직정원 "98"을 "110"으로 하고 건설사업소의 건설보조수 "24"를 "36"으로 하며, 합계란 정원 "379"를 "415"로 하고 건설사업소의 합계 "285"를 "32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037 호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하부조직) 중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및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① 소장 밑에 관리과, 설비공사와, 건축공사와 및 토목공사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설비공사와장은 지방공업기정으로, 건축공사와장은 지방건축기정으로, 토목공사와장은 지방토목기정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관인, 인사, 보안 및 청사관리
2. 회계, 물품 및 자재 관리
3. 토지매입 및 보상
4. 지장물조사 및 철거
5. 주택분양 및 관리
6. 사업기본계획 총괄
7. 공사의 진도과약 및 심사분석
8. 재원확보 및 예산관리
9. 기타 사업소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설비공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설비(기계, 전기 및 통신시설 등) 공사의 설계, 시공감리 및 감독

④ 건축공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감독
2. 감리단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별표) 정원표중 4급정원 내용의 "행정직 2"를 "행정직 1, 능역직 1"로 하며, 5급정원 내용의 "토목 조

는 건축직 1"을 "기계 또는 전기 직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남지도 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겸보현 ㉔

◎서울특별시조례제 2038 호

서울특별시 남지도 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남지도 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설치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여 서울특별시 남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치) 사업소의 위치는 시장

<p>이 따로 고시한다.</p> <p>제 3 조 (소장) ①사업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기계기사 또는 지방전기기사로 보한다.</p> <p>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제 4 조 (공무원의 정원) ①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p> <p>제 5 조 (하부조직) ①사업소에 관리계, 장비계 및 전기계를 두고,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장비계장은 지방기계기사로, 전기계장은 지방전기기사로 보한다.</p> <p>②사업소의 세별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관리계</p> <p>가. 문서, 보안, 관인관수 및 청사관리.</p> <p>나.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p>	<p>다. 인사, 복무, 급여 및 후생</p> <p>라. 시험실 유지관리</p> <p>마. 처리기술 연구개발</p> <p>바. 세입 및 세출의 총괄</p> <p>사. 부산물(고체연료, 퇴비)의 관리 및 판매</p> <p>아. 기타 다른계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장비계</p> <p>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p> <p>나. 설비개발</p> <p>다. 중장비 유지관리</p> <p>라. 폐기물 처리조정</p> <p>나. 처리기계 기술개발</p> <p>3. 전기계</p> <p>가. 전기설비 유지관리 보수</p> <p>나. 전기설비개발 및 에너지 절감</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계급별	정원	정원내용
5 급	1	기계 또는 전기직 1
6 급	3	행정직 1, 기계직 1, 전기직 1
7 급	5	행정직 2, 기계직 1, 전기직 1, 화공직 1
8 급	6	행정직 2, 기계직 1, 전기직 1, 화공직 1, 토목직 1
9 급	6	행정직 2, 기계직 1, 전기직 1, 화공직 1, 토목직 1
기능직	55	7 등급 : 기계장 24, 전기장 2 8 등급 : 기계원 29

계급별	정원	정원내용
고용직	12	수위 4, 타자원 1, 전달부 1, 전공 2, 청부 3, 운전원 1
계	88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운동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039 호

서울특별시립운동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운동장 설치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운동장의 명칭과
위치표중 "서울운동장"을 "동대문운
동장"으로, "효창구장"을 "효창운동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대학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040 호

서울시립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시립대학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시립대학지방공무원 정원
표중 6급정원 "11"을 "10"으로
하고 정원 내용중 "농림직 1"을 삭
제하며, 7급정원 "15"를 "16"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사서직 "1"을 "2"
로 하며, 8급정원 "15"를 "17"로
하고 정원내용중 사서직 "1"을 "2"
로 하고 "전기직 1"을 신설하며, 합
계란 정원 "119"를 "12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시험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서울특별시조례제 2041 호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
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8급정
원 "1"을 "4"로 하고 정원 내용에
"토목직 3"을 신설하며, "연구직 정
원 3" 및 "광업연구사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 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례중 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서울특별시조례제 2042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
시설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지방공무원 정원표
가. 근로자회관중 9급정원 "4"를 "3"
으로 하고 정원 내용중의 행정직
"4"를 "3"으로 하며, 고용직 정원
"11"을 "13"으로 하고 정원내용의
수위 "2"를 "4"로 하며, 합계란
"18"을 "19"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서울특별시조례제 2043 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고용직 정원 "807"을 "809"로 하고 정원내용중 전공 "128"을 "129"로, 조질수 "498"을 "499"로 하고 합계란 정원 "1,075"를 "1,07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044 호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고용직 정원 "10"을 "12"로 하고 정원내용의 잡무원 "1"을 "2"로 하고

"기계공 1"을 신설하며, 합계란 정원 "32"를 "3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사업관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045 호

서울특별시립청소년사업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청소년사업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고용직 정원 "6"을 "10"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수위 "1"을 "2"로, 청부 "2"를 "3"으로 하고 "기계공 1" 및 "전공 1"을 신설하며 합계란 정원 "16"을 "2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046 호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하부조직) 제 1 항중 "사업소에 관리부, 동물부 및 동식물연구실을 두고, 관리부에 서무과, 운영과, 시설관리과 및 식물과를"을 "사업소에 관리부, 동물부, 운영담당관 및 동식물연구실을 두고, 관리부에 서무과, 시설관리과 및 식물과를"로하고
제 2 항중 "동물부장은 지방수의관(4급)으로" 다음에 "운영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를 신설하며 "서무

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로 하고 동조 "제 4 항"을 "제 10 항"으로 하고 동항중 "운영과는"을 "운영담당관은"으로 "4민자시설 및 위탁시설 관리지도 감독"을 삭제하며,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 제 8 항, 제 9 항, 제 10 항"을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 제 8 항, 제 9 항"으로 하며,

(별표중)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4급 정원 "2"를 "3"으로 하고 정원내용에 "행정직 또는 별정직 1"을 신설하며, 5급정원 "8"을 "7"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2"를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제 2125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 조 (통계담당관) 제 2 항 제 1 호 "라"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라. 각종 통계보고의 조정 및 통제
제 13 조 (총무과) 제 2 항 제 1 호 "바"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 직원채워항상과 시 체육팀 운영
제 16 조 (행정과) 제 2 항 제 1 호에

"타" 목을 "파" 목으로 하고 "타"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동항 제 3 호에 "하"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다. 지명 조정위원회 운영
하. 각종 보고문서의 통제

제 22 조 (세정과) 제 2 항 제 1 호 "바. 지방세 관계송무업무 수행 및 지도" 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 2 호에 "라"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라. 지방세 관계송무업무 수행 및 지도

제 26 조 (의약과) 제 1 항중 "간호사업제"와 "간호사업제장"을 "가족보건계"와 "가족보건계장"으로 하고, 제 2 항중 "3. 간호사업제"를 다음과 같이 하며,

3. 가족보건계

가. 모자보건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

나. 가족계획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

다.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지도

라. 구강보건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

마. 국민영양조사

제 30 조 (상공과) 제 2 항 제 1 호의 "바. 계량법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 3 호에 "다"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라. 계량법 운용에 관한 사항

제 57 조 (민방위과) 제 2 항 제 2 호 "라. 인력동원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삭제하고

제 58 조 (운영과) 제 2 항 제 1 호의 "마" "바" "사" 목을 "바" "산", "아" 목으로 하고 "마"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인력동원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 58 조 (운영과) 제 1 항중 "운영과에 교육계, 민방공계와 화생방계를 두고 교육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를 "운영과에 교육계, 민방공계, 화생방계 및 강남교육장과 강북교육장을 두고 교육계장과 강남북교육장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로 하고 동조 제 2 항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4. 강남교육장</p> <p>가. 강남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교육실시</p> <p>나. 강남민방위교육장 시설 및 장비관리</p> <p>다. 강남민방위 교육교관단 운영</p> <p>라. 강남교육장 교육기자재 확보</p> <p>마. 기타 강남민방위 교육장에 관한 사항</p> <p>5. 강북교육장</p> <p>가. 강북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교육실시</p> <p>나. 강북민방위교육장 시설 및 장비관리</p> <p>다. 강북민방위 교육교관단 운영</p> <p>라. 강북교육장 교육기자재 확보</p> <p>마. 기타 강북 민방위교육장에 관한 사항</p> <p>제 82 조 (올림픽 기획담당관) 및 제 83 조 (올림픽 관리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82 조 (올림픽 기획담당관) ①올림픽 기획담당관 밑에 총괄계, 기획 1 계, 기획 2 계 및 체육진흥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올림픽 기획담당관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 총괄계</p> <p>가. 올림픽준비단 업무의 종합조정 및 총괄</p>	<p>나. 올림픽 준비계획 종합조정</p> <p>다. 올림픽상황실 운영</p> <p>라. 기타 준비단내 다른 담당관 및 담당관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기획 1 계</p> <p>가. 분야별 올림픽 관련 계획 (시설건설분야 제외)의 수립, 조정 및 지도</p> <p>나. 분야별 올림픽 관련 계획 (시설건설분야 제외)의 진도확인 및 심사분석</p> <p>3. 기획 2 계</p> <p>가. 올림픽시설 및 도시정비 분야의 종합계획 조정 및 지도</p> <p>나. 올림픽시설 및 도시정비 분야의 진도확인 및 심사분석</p> <p>4. 체육진흥계</p> <p>가. 사회체육 진흥업무 종합조정</p> <p>나. 체육정보 조사연구 및 통계관리</p> <p>다. 체육상 시상 및 체육의날 행사지도</p> <p>라. 체육시설확충, 운영, 관리지도 및 감독</p> <p>마. 경기용구의 표준화 설정 및 각종 경기단체 지도</p> <p>바. 선수육성 관리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p> <p>사. 체육시설 관리업무 종합조정</p> <p>아. 서울특별시 체육회 운영</p> <p>제 83 조 (올림픽 관리담당관) ①올림픽 관리담당관 밑에 관리계, 자료계, 지도</p>
---	---

제 및 홍보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올림픽 관리담당관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계

가. 선수촌, 기자촌 및 올림픽 피 밀리용 아파트 분양관리

나. 올림픽 사업 특별회계 운용다. 기타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자료계

가. 자료실 운영

나. 올림픽 자료수집 및 보관관리다. 올림픽 준비기록 및 자료의 출판

3. 지도계

가. 올림픽에 관한 범시민 운동 지도 및 교육

나. 올림픽 자원봉사대설치 및 운영지도다. 시립 체육시설 관리

4. 홍보계

가. 올림픽 대내외 홍보

나. 올림픽홍보물 제작 및 배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2126 호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사무분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6조(건설사업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건설사업소) ①건설사업소에 관리계, 공사1계 및 공사2계를 두고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공사1계장 및 공사2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②사업소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계

가. 문서, 보안, 관인, 관수 및 청사 관리

나. 인사, 복무, 급여 및 후생

다. 공사용 장비관리

2. 공사1계

가. 소규모 도로포장

- 나. 굴착도로의 포장계획 및 복구
- 다. 파손포장면의 보수
- 라. 제설작업
- 마. 도로순찰
- 바. 인부배치 및 작업감독
- 3. 공사 2 계
 - 가. 한강상 교량보수
 - 나. 주요교량, 교가, 차도, 육교, 터널구조물 보수
 - 다. 구조물 순찰 및 안전점검
 - 라. 인부배치 및 작업감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㉔서울특별시규칙제 2127 호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사무
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관리과)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관리과) ① 관리과에 서무계, 경

리계, 관리 1 계 및 관리 2 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의 계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계
 - 가. 문서, 관인관수, 보안 및 청사
관리
 - 나. 인사, 복무 및 직원후생
 - 다. 사업기본계획 총괄
 - 라. 공사의 진도 파악 및 심사분석
 - 마. 재원확보 및 예산관리
 - 바.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계
 - 가. 계약 및 입찰
 - 나. 예산의 지출 및 결산
 - 다. 물품의 수급관리
 - 라. 자재의 수급관리
3. 관리 1 계
 - 가. 세입총괄 및 현계
 - 나. 분양아파트 공급 및 관리
 - 다. 국민주택규모 융자금관리
4. 관리 2 계
 - 가. 토지매입 및 보상
 - 나. 지상물조사 및 철거
 - 다. 단지내 상가 및 유상시설 용
지 매각
 - 라. 토지 및 공급주택 소유권이
전 등기
 - 마. 임대아파트공급 및 관리

제 3 조 (계획과)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설비공사과) ① 설비공사과에 설비계, 기계계, 전기계를 두고 설비계장은 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전기기좌로 기계계장은 지방기계기좌로, 전기계장은 지방전기기좌로 보한다. ②설비공사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비계

가. 에너지 관리공단의 기계 및 전 기설비 시공업무 관장 나. 단지 기반시설의 설비업무 다. 설비관계 대외기관업무 협의 라.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계계

가. 아파트단지내 냉난방설비, 열병 합시설등 각종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감독에 관 한 사항

3. 전기계

가. 아파트단지내 전기 및 통신공 사등 전기에 관련된 공사의 설 계시공, 감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 4 조 (건축공사과) 제 1 항을 다음 과 같이 하고

① 건축공사과에 건축 1 계, 건축 2 계 및 건축 3 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전

축기좌로 보한다.

제 2 항제 1 호중 “ 건축 1 계는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 항을 분장한다” 를 “ 건축 1 계는 전 설기본계획수립 및 총괄, 감리단 운 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 항을 분장한다” 로 하여 동조 동항 의 “ 제 2 호 ” 및 “ 제 3 호 ” 를 삭 제한다.

제 5 조 (토목공사과) 제 2 항 제 1 호중 “ 토목 1 계는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를 “ 토목 1 계는 택지개발 및 공사 계획과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사 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5.12.26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규칙제 2128 호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사무

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사무과) 제 2 항제 1 호 "다" 목중 "(매점운영등)"을 "(위탁 및 민자시설 운영지도등)"으로 하고

제 3 조 (운영과)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를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로 한다.

제 9 조 (운영담당관) ① 운영담당관 밑에 운영담당, 홍보담당, 환경담당을 두고 각 담당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각 담당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담당

가. 공원시설 운영 및 이용안내

나. 공원의 질서유지 및 시설경비
 다. 기타 다른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홍보담당

가. 공원홍보 및 공보

나. 안내소 및 방송실 운영관리

다. 미야보호 및 유실물 관리

라. 관람객의 보건위생등 보호관리

3. 환경담당

가. 공원청소등 환경정비

나. 화장실 및 휴지통관리

다. 청소차량 유지관리

라. 기타환경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